

의안번호	2216718
의 퇴 인	김예지의원
회 답 일	2026.6.11.
추계번호	26C0878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 (금연을 위한 조치)	○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<u>3분의 1 이상</u>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주차장 및 필로티 구조의 공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,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- (현행) <u>2분의 1 이상</u>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할 경우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조 (금연을 위한 조치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금연을 위한 조치(안 제9조)

- 개정안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요건을 현행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,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주차장 및

필로티 구조의 공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간을 추가하는 것으로, 지방자치단체의 금연구역 지정 및 안내표지 설치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다만,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신청 요건 완화 및 금연구역 지정 범위 확대에 따라 추가로 지정될 공동주택의 수와 각각의 금연구역 규모를 전제하여야 하나, 현시점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움
 - 개정안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신청을 전제로 이루어지므로, 신청요건 완화에 따라 실제 신청이 증가하는 정도와 이에 따른 추가 지정 규모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
 - 또한, 개정안은 필로티 구조의 공간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용공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, 추가 지정 대상의 범위 및 안내표지 설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함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제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nabo.go.kr